

『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0년 8월 25일

나. 발 의 자 : 장세구, 김낙관, 김영길, 김재우, 안장환, 이지연,
장미경 의원(7인)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9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9월 11일

제2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장 세 구 의원

나. 제안이유

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, 관련 범죄 예방 시설물의 설치를 권장함으로써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공중화장실 관리책임자의 범죄예방에 대한 경각심 제고(안 제4조)
-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과 안심스크린 등 안전장치 설치 근거 마련(안 제5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예고(2020. 9. 1. ~ 9. 7.) 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강 창 조

- 본 「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은
 - 공중화장실의 ‘위생’과 ‘편의성’만을 고려하고 있는 현행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‘범죄예방’ 목적을 추가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,
 - 범죄예방 및 시민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됨. 다만, 소관부서에서는 유동인구, 남녀공용화장실 등 범죄취약지대를 고려하여 우선순위와 설치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